SW 저작권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민후

INDEX

1. SW저작권 분쟁 유형

2. SW저작권 분쟁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2)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3) 프로그램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사용

(4) 라이선스 서비스의 변경

1. SW 저작권 분쟁 유형

- 원인 : SW 저작권자의 권리(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를 침해함
- 사례유형
  -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 프로그램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사용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
  - 프로그램 불법 복제 후 개작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판매 (주로 SW개발사,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을 베낀 경우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내용 변경 (구독형 라이선스와 영구 라이선스 관련)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 반드시 정품 SW 사용해야 함 (라이선스 발급유형, 기간 등 확인필요)
- 불법 SW 분쟁시 저작권의 조치 별 대응

저작권자	침해자 대응	
내용증명 / 경고장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 유선(전화)을 통한 합의시도	
민사소송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대응 (방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공격) 민사조정신청	법인 대표자 직원
형사고소	수사단계 (압수수색), 형사재판 형사조정신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SW 저작권 분쟁 유형

SW 불법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예시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소프트웨어프로그램등록증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2.	갑 제1호증의 2	소프트웨어프로그램등록증 및 홈페이지 프로그램
3.	갑 제2호증	IP 할당정보
4.	갑 제3호증	사용권계약발췌
5.	갑 제4호증	불법사용내역
6.	갑 제5호증의 1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문
7.	갑 제5호증의 2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8985 판결문

갑제4호증 불법사용내역

*불법사용 IP

2[redacted]

*기간

202[redacted]-02

1. SW 저작권 분쟁 유형

손해배상액수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판매이익)*** 불법으로 타사 프로그램 복제,전송 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등

② .....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품구입비용, 라이선스 비용 상당액)***

불법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불법 SW 저작권침해 사건 참작사항

- **정품구입여부** (불법사용 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 지급의 효력은 없음)
- **프로그램 사용현황** (풀패키지 모듈의 경우 실제 사용 모듈)
- **침해기간, 침해규모**
- **평소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관리 정도** (형사의 경우)

  - **소프트웨어 / 라이선스 관리 대장 운용**
  - **직원들의 정품사용 서약서 작성**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 지정**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 저작권사로부터 **경고장/내용증명** 받은 경우
  - **의심 정황에 관한 증거로 IP, 맥어드레스 등 제시**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답변하지 않는 경우 : 민사소송/형사고소 가능성** (간혹 추가 대응 없는 경우도 있음)
  - **답변하는 경우 : 합의로 분쟁 종결 가능성 있음** (합의금, 제품구매 / 비밀유지조항)
    - 과도한 합의금, 불필요한 기능까지 구매요구, 구매처 강제 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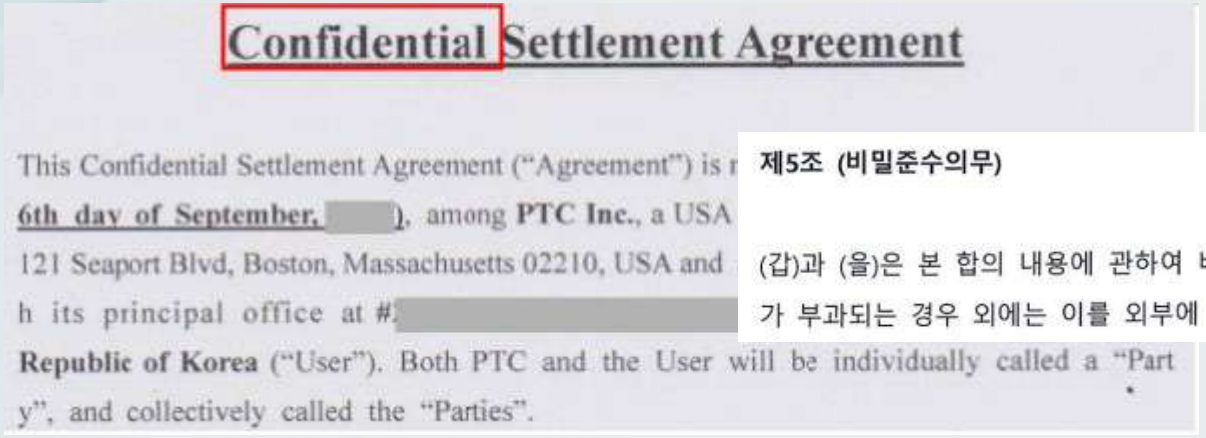

Confidential Settlement Agreement

This Confidential Settlement Agreement ("Agreement") is r
6th day of September,), among PTC Inc., a USA
121 Seaport Blvd, Boston, Massachusetts 02210, USA and
h its principal office at #
Republic of Korea ("User"). Both PTC and the User will be individually called a "Part
y", and collectively called the "Parties".

제5조 (비밀준수의무)

(갑)과 (을)은 본 합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실제 사례 : 불법SW 크랙버전 (풀패키지)을 다운로드하여 그 중 일부 모듈 사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실제 사례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redacte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마스터캠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 [redacted]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사용자에 필요한 모듈만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가격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각 모듈 및 모듈 레벨별로 달리 책정하였다.

② 피고들이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 설치하였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모두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마스터캠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실제 사례

③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설치완료 후 1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여러 모듈을 구입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개별 모듈 가격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판매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여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 상당한 손해액 인정규정 적용

(보통 청구금액의 50~70%선에서 인정되나, 기타 사정 있는 경우 20~30%에 그치기도 함)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 손해배상액수, 지급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x (형사고소 고소취하)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2주 이내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ArcGIS 프로그램의 복제 및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민사, 형사, 행정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각자 부담한다.

합의한 경우

-> 손해배상액수, 지급기한, 라이선스 구매, 감사규정, 비밀유지 조항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참고 : 외국 저작권사의 소송제기

-> 위임장 적법성 문제제기,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

-> 외국 저작권사가 자진하여 소취하

보정할 사항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이 CEO, chairperson, president 등 대표기관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위임장 작성자가 원고 법인을 위하여 위임장에 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rticles of Incorporation(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한 기재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redacted]가 원고를 대표하여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필요가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불법 SW 저작권침해의 형사사건 - 형사사건 벌금 or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행번호 2-[redacted]

사 건 결 정 결 과 증 명 서

① 사 건 번 호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 [redacted]호
피의자	②성 명	[redacted]
	③주민등록번호	[redacted]-1******
	④주 소	[redacted] 이하 기재생략
⑤죄 명		가.저작권법위반
결정	⑥년 월 일	2022.02[redacted].
	⑦결 과	가-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폰트 (Font) : 서체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체파일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서체 도안의 경우에는 저작권 인정x**
- **프로그램 저작권의 일종으로 보호됨**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폰트 (Font) : 서체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 서체파일과 피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본질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서체파일을 **복제 • 개작 •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폰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
- **손해배상 액수 : 폰트 사용비용 (영구라이선스/ 구독 라이선스)**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폰트 (Font) : 서체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폰트 업체에서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 / 소송제기 등)**
  - SW 불법 다운로드 사안 대응과 유사

- SW 저작권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이 보통 이루어지나,
  폰트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저작권사에서 유료 폰트의 시리얼번호, 세금계산서, 라이선스 보유여부 등을 확인요청함**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폰트 (Font) : 서체 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폰트 파일 다운로드 시 사용범위 확인 필요**

  -기업 로고, 슬로선, 상표도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대부분의 폰트 파일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

- **폰트의 출처표기 필요**

2. 분쟁 사례 (1) 불법 SW 다운로드 및 설치

폰트 저작권 및 라이선스 안내

저작권자	제작사
KERIS	디자인210

OFL

국제 SIL(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에서 만든 오픈폰트 라이선스로, OFL 폰트는 이용 대상 및 목적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문서, 인쇄, 출판, 광고, 영상, CI/BI, 웹사이트, UI/UX, E-BOOK, 임베딩	○	출처 표기 의무	✕
폰트 파일 재배포	○	폰트 파일 자체의 유료 판매	✕
상업적 이용	○	폰트 파일의 수정, 편집, 복사, 배포 등의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령	✕

KERIS 공모폰트를 제외한 폰트의 정확한 사용범위는 폰트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확인바랍니다.

폰트 설치 방법

- 먼저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압축파일을 풀어주세요.

방법 1

폰트파일(ttf)을 복사하여 C드라이브 > Windows 폴더 > Fonts 폴더에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방법 2

폰트 파일(ttf)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https://copyright.keris.or.kr/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2. 분쟁 사례 (2)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실제 사례 : 1) 라이선스 범위 외의 사용

2)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은 자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사용하게 함

3) 원고는 2013. 2. 27. 원고의 판매총판, 대리점 역할을 하는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2012. 2. 27.부터 2014. 8. 30.까지, 계약금액을 [redacted]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공사 차세대 [redacted] 시스템에 한정으로 하여 원고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redacted]은 [redacted]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공사에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정품인증(차세대 [redacted] 시스템 관련 UI[1] 구축 라이선스)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분쟁 사례 (2)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실제 사례

4) 피고 공사는 피고 [redacted]에 임대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중 [redacted]시스템 개발을 위해 원고 제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공사의 표장을 피고 [redacted]의 표장으로 변경하는 등 피고 공사의 차세대 [redacted]시스템 중 차세대 발매프로그램에 대해 수정 작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2].

5) 피고 공사는 피고 [redacted]에 원고 제2 프로그램과 피고 [redacted]을 위해 수정한 차세대 [redacted]프로그램을 전송하였고, 그 프로그램들은 피고 [redacted]전용 역사인 [redacted], [redacted]역의 창구단말기, 자동발매기에 설치되었으며[3], 피고 [redacted]은 피고 공사에 정보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다(이하 피고 [redacted] 전용역사에 원고 제2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를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한 행위

2. 분쟁 사례 (2) 프로그램 라이선스 범위 외의 이용

실제 사례

피고 공사의 원고 프로그램 이용 기간과 범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 기간과 범위에 따른 원고 프로그램 사용료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제1 행위로 인한 피고 공사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은 원고 제2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점, 지점, 역사, 사무소에 설치한 원고 제2 프로그램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 제1행위 손해배상, 제2행위 프로그램 폐기청구 인정

프로그램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사용

2. 분쟁 사례 (3) 프로그램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사용

실제 사례 : 유지보수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프로그램 사용하여 유지보수 진행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는 [redacted]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를 채권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채권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채권자가 기간만료일 1개월 전인 2015. 11. 30.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함에 따라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2. 분쟁 사례 (3) 프로그램 이용허락 기간 만료 이후의 불법사용

실제 사례 :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보유한 것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유지·보수를 할 경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배포, 전송이 일어날 것이므로, 신청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프로그램 유지·보수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개작, 복제, 배포, 전송의 금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의 신청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 프로그램 사용금지의 내용에 유지보수 행위금지도 포함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내용 변경

2. 분쟁 사례 (4)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내용 변경

실제 사례 :

- SW저작권사 :

  영구버전 라이선스를 구독형 라이선스로 전환하고자 함

  영구 라이선스의 반납은 없음

  일시적인 구독형 라이선스 기간이 끝나면 영구 라이선스로 복귀 가능 주장

- 영구 라이선스 구매자 : 불충분한 안내와 일방적인 변경이라고 주장
- 법적인 문제 :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SW저작권 분쟁 예방 10계명〉

01 소프트웨어 관리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한다.

02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관리 전담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

03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수립한다.

04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05 불법소프트웨어 발견 시 즉각 삭제조치 한다.

06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입 · 배분한다.

07 소프트웨어 설치 및 라이선스 보유현황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을 마련한다.

08 소프트웨어 관리의 기준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09 소프트웨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 한다.

10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

감사합니다.